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50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 박상웅 · 신동욱 · 김미애

박성훈 • 박덕흠 • 이인선

박정훈 · 강대식 · 조지연

유용원 · 최은석 · 김민전

김종양 • 우재준 • 조경태

최형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, 최근에도 기록적인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.

한편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,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,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·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,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'녹조대

응 종합센터'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 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6(녹조대응 종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에서의 녹조의 발생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조대응 종합센터(이하 "녹조대응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녹조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녹조의 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
 분석
- 2. 녹조 대발생 등 조류 관련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
- 3. 녹조의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·개발사업 추 진 및 조정
- 4. 녹조 관련 관계기관 공동 조사 · 연구 사업의 추진 및 조정
- 5.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 협의체 운영 및 지원
- 6. 그 밖의 녹조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조대응센터의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

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 <u>신 설></u>	제21조의6(녹조대응 종합센터의 설치・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에서의 녹조의 발생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녹조대응 종합센터(이하 "녹조대응센터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한다. ② 녹조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녹조의 원인 규명과 저감대 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분석 2. 녹조 대발생 등 조류 관련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3. 녹조의 예방 및 제거 기법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・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4. 녹조 관련 관계기관 공동 조사・연구 사업의 추진 및 조정 5.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
	협의체 운영 및 지원

- 6. 그 밖의 녹조 대응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
-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조대응센 터의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